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등록면허세(등록분) 부과취소

2016.4월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(등록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코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 **** 주식회사
- 2. 물 건 지 : 강남구 테헤란로8길 *****

3. 취소사유 : 50억원의 전환사채발행 등기 신청을 하면서 **법인 기타등기로 등록면허세 48,240원 납부**하여야 하나, 착오로 50억원에 대하여 자본금 증자 등기로 등록면허세 24,000,000원을 신고납부하여 착오납부한 24,000,000원에 대하여는 환급신청하고 48,000원을 재신고납부하여 등기완료함

- 4. 부과취소 내역

(단위: 원)

세 목	당 초	취소(경정)	차 액	비 고
등록면허세(등록)	20,000,000	20,000,000	0	
지방교육세	4,000,000	4,000,000	0	
합 계	24,000,000	24,000,000	0	

- 붙임 1. 부과취소결정서 1부.
 2.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환급청구서 1부. 끝.

